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62 발의연월일: 2022. 11. 15.

발 의 자: 김희곤 · 구자근 · 김성원

박대수 · 백종헌 · 송언석

안병길 · 양정숙 · 이명수

한기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,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 협상을 할 수 있음. 그리고 대행 협상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이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규정함.

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, 그와 같은 신청요건이 대행 협상의 활성 화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또한,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공급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만 대금 조정을 신청하 고 있어, 대행 협상 제도가 남용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, 대금 조정 대행 협상 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"를 "변동된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 협의를 신청한 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햀 개 정 아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(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제16조의2(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(2) -----②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 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른 중소기업협동조합(이하 "조 합"이라 한다)은 목적물등의 공 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----- 변동된 경우----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 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 한 협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 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③ ~ ① (생 략) ③ ~ ① (현행과 같음)